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안)

제1조(목적)

이 약관은 _____(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 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게시·설명의무)

- ① 사업자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상품별 수업 내용, 수업시간, 수업일정 및 수업진행을 위한 최소정원
 2. 이용상품별 총 수업횟수 및 이용기간
 3.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4. 예약제 수업의 예약 및 변경 절차, 수업횟수의 차감 기준
 5. 이용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6. 약관 내용 및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7.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
 8. 회원 안전수칙 등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9. 휴업·폐업 등 영업 중단 시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 ② 사업자는 회원이 이용신청을 하기 전에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철회)

-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은 <붙임>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계약서 사본(전자문서 형식의 사본을 포함)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사업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에 계약서 또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제4조(회원자격)

- ① 회원은 이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신청한 상품의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회원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사업자와 회원이 합의하여 등록기간의 시작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회원자격을 가진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는 회원증 제시 요구 등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는 회원이 본인인지 확인한 후 회원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회원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⑤ 회원자격은 회원 본인에 한정하여 부여되며, 제3자와 이를 공유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원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회원 및 양수인이 함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잔여회원 자격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제5조(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등록기간 동안 회원이 신청한 상품의 총 수업횟수만큼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 ②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아직 수강하지 않은 수업횟수는 모두 소멸하며, 회원은 이에 대해 환불이나 보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이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2항에 따라 아직 수강하지 않은 수업횟수는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잔여 수업횟수를 다음 등록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수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수업 예약 및 변경)

- ① 수업을 받으려는 회원은 사전에 수업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되지 않은 회원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수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___시간 전까지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의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수업 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단, 사전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내용에 따라 차감한 수업을 보강수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수업 예약을 취소하거나 강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수업 예약 취소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업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⑤ 제3항에 따른 강사 변경 시 회원이 해당 강사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은 해당 수업의 수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로 인한 수업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⑥ 제2항의 수업취소에 따른 보강수업, 제3항의 사업자의 수업 제공 불능 시의 보상 등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회원이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에 비추어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내용에 따릅니다.
- ⑦ 사업자는 특정 시간대에 예약 수요가 집중되어 회원의 수업 예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예약 운영 기준을 회원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기 쉽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회원이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예약하지 못하여 이용에 현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 시스템의 운영 개선, 수업 증설, 예약 기준의 합리적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⑧ 사업자가 예약에 따른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에 따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수업의 진행)

- ① 회원은 수업시작시간 전까지 수업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수업 당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업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 ③ 사업자는 회원의 반복적인 지각 또는 강사의 지시 불응 등 수업 중 방해 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강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회원의 수업 참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입실을 제한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의 조치로 인하여 회원이 잔여 이용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이용 연기)

- ① 회원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은 연기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연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① 사업자 또는 회원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지급한 이용료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환급기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	이용료 + 위약금 환급
	등록기간 개시일 이후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사업자와 회원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기준에 따라 환급 ① $\left[\text{이용료} - \left(\text{이용료} \times \frac{\text{야간제한기간(일수)}}{\text{계약이용기간(일수)}} \right) \right] + \text{위약금}$ ② $\left[\text{이용료} - \left(\text{이용료} \times \frac{\text{야간제한횟수}}{\text{계약이용횟수}} \right) \right] + \text{위약금}$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	이용료 - 위약금 환급
	등록기간 개시일 이후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사업자와 회원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기준에 따라 환급 ① $\left[\text{이용료} - \left(\text{이용료} \times \frac{\text{야간제한기간(일수)}}{\text{계약이용기간(일수)}} \right) \right] - \text{위약금}$ ② $\left[\text{이용료} - \left(\text{이용료} \times \frac{\text{야간제한횟수}}{\text{계약이용횟수}} \right) \right] - \text{위약금}$
· 이용료는 회원이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총 금액(실 결제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보강수업은 이미 이용한 횟수로 처리합니다.
- ③ 사업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사은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의 경우에는 회원이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사은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다. 이 경우,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은품은 현존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손해배상)

- ① 사업장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나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②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요가 또는 필라테스기기의 파손 등 요가 또는 필라테스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 및 사업자의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상해 사고의 발생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강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강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경감합니다.

제11조(휴관 등)

-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의 이용기간은 휴관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약금 없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미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휴·폐업시 조치)

- ①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소지품의 보관)

-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사업자는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멸실 또는 훼손이 사업자나 사업자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전에 고가물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와 회원이 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을 의뢰한 것이 아닌 고가물의 경우 사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사물함 반환)

- ① 사업자가 회원에게 별도의 사물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회원은 사업장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사물함 열쇠를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물함에 대한 관리 권한을 사업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사업장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사업장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 물품의 보관 및 처분)

- ① 회원은 이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사업장에 있는 자신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기간 종료일에도 회수되지 않는 물품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유선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1. 미회수된 물품의 내역
2.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사업자가 폐기 등 임의처분한다는 내용
- ③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폐기·임의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준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변질의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통지한 후 즉시 폐기·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 ①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회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수업 참여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신, 수술 이력,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제1항의 문의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답변 누락·허위의 대상이 된 사항과 관련하여 상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한 사실이 상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기타)

- ① 사업자는 회원이 안심하고 시설 및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④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붙임 1>

이 용 신 청 서(수업횟수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2. 회원권 세부사항

종 류	☐ 신규 ☐ 재등록 ☐ 양도
수 강 상 품	(강사명 : , 총강의수 : 회)
결 제 금 액	원
결 제 방 법	☐ 현금 ☐ 신용카드 ☐ 계좌이체
환 불 방 법	☐ 환불 시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회원권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원 자 격 양 도 가 부 및 양 도 비	☐ 양도 가능 ☐ 양도 불가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사전 고 지 사 항 (신체문제, 질병 등)
비 고

<붙임 2>

이 용 신 청 서(이용기간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2. 회원권 세부사항

종 류	☐ 신규 ☐ 재등록 ☐ 양도
수 강 상 품	(강사명 : , 총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결 제 금 액	원
결 제 방 법	☐ 현금 ☐ 신용카드 ☐ 계좌이체
환 불 방 법	☐ 환불 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회원권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원 자 격 양 도 가 부 및 양 도 비	☐ 양도 가능 ☐ 양도 불가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사전 고지사항 (신체문제, 질병 등)
비 고